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3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한지아 · 이헌승 · 고동진
조경태 · 박정하 · 김 건
김재섭 · 유용원 · 박덕흠
임종득 · 안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